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191
----------	-------

발의연월일 : 2025. 8. 14.

발 의 자 : 고민정 · 김문수 · 민형배
임호선 · 김한규 · 김영배
윤건영 · 이기현 · 문대림
박지원 · 오세희 의원
(11인)

제안이유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은 18세 이상으로, 정당 가입 연령은 16세 이상으로 하향되면서 학생의 참정권은 점점 확대되었으나 정작 학생을 지도하는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은 엄격하게 제한돼 있음.

교원은 학생이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춘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지만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기계적 기준에 갇혀 학교에서 정치 교육은 물론 사회적 의제를 다루기도 매우 어려운 실정임.

심지어 교육 전문가인 교원이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서 직접 참여하지 못해 교육 현장과 정책의 간극이 발생하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에 관한 권고'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정치적 기본권 제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직무상의 권한 이용 여부 등에 따라 제한의 범위와 정도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함.

학교에서 폭넓은 정치·사회적 의제로 교육이 이뤄지고 교육 주체인 교원이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닌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보장할 필요성이 있음.

주요내용

가.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 따른 정치 운동의 금지 및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정치 운동죄를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지 않도록 함(안 제55조제1항).

나. 사립학교 교원이 사퇴하지 않고 그 직을 유지하면서 교육감선거에 출마하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휴직 근거 규정을 신설함(안 제59조제1항제13호·제14호 및 제4항 단서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고민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192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1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 중 “규정을”을 “규정(「교육공무원법」 제53조제5항에 따라 교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및 제84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포함한다)을”로 한다.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7호 및 제7호의2의”를 “제7호, 제7호의2, 제13호 및 제14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를 제1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에”를 “제1항제7호, 제7호의2, 제13호 및 제14호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

1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을 하려는 경우

다만, 제1항제13호 또는 제1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에 따른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

후 60일까지 이내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5조(복무) ①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립학교 · 국립학교 교원에 관한 <u>규정을 준용한다.</u>	제55조(복무) ① ----- ----- ----- <u>규정(「교육공무원법」 제53조제5항에 따라 교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및 제84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포함한다)</u> 을-----.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59조(휴직의 사유) 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그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u>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u>	제59조(휴직의 사유) ① ----- ----- ----- ----- ----- ----- ----- ----- ----- ----- <u>제7호, 제7호의2, 제13호 및 제14호의</u> ----- -----.
1. ~ 12. (생략)	1. ~ 12. (현행과 같음)
<u><신 설></u>	1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선거에 입

<신 설>

13. (생략)

② (생략)

③ 임용권자는 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며, 그 밖에 같은 호에 따른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휴직기간과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 등에
관하여는 정관(사립학교경영자
의 경우에는 그가 정하는 교원
의 신분보장 및 징계에 관한
규칙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정한다. <단서 신
설>

후보하려는 경우

1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을 하려는 경우

15. (현행 제13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제7호, 제7
호의2, 제13호 및 제14호에---

④ -----

-----. 다만, 제1항제13호
또는 제14호의 사유로 인한 휴
직기간은 「지방교육자치에 관

----- . 다만, 제1항제13호 또는 제1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지방교육자치에 관

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34
조부터 제36조까지에 따른 선
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 후
60일까지 이내로 한다.